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1과

( 2017. 1. 23 )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유 준 상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7년 1월 10일 (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 2017년 1월 11일 (수)

### 4. 관계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3항

### 5. 개정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및 출자금 변경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6. 주요 개정 내용

### ○ 감면조항 신설

제13조의2(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 7.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2016년 3월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 감면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자치구에 시달하였으며, 이에 우리구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구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 검토의견으로는

본 감면조항 신설에 따른 세입 감소분은 마포구 소재 사회적 협동조합 11개 모두 출자금을 변경할 경우에도 약2,386천원으로 미미한 반면, 감면에 따른 혜택은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큰 지원이 될 수 있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관 계 법 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1.7.] [법률 제13729호, 2016.1.6., 타법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3.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 2014.11.19.>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증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31.>